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2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이종배·우재준·박충권

김소희 · 신성범 · 임이자

강승규 • 박정하 • 박상웅

임호선 · 김용태 · 김승수

성일종 · 서천호 · 인요한

이연희 • 유용원 • 나경원

이강일 · 김종양 · 곽상언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었음.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로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실 질적인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6조)
- 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다.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타 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 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댐용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바.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의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지정기

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34조부터 제36조).

법률 제 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 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 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중부내륙연 계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 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을 통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발전종합계획(이하"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 3.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5. 저수지·댐·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6.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 7.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 충에 관한 사항
- 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 · 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 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저발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내수면 발전에 관한 사항
- 11.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한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 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

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
 ·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⑨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

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 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이용과 수자원 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 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계획(이하 "자연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2.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 3. 호소(湖沼)・하천・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항

-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5. 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생태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 환경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의결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한다
 -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 3. 해당 사업이 다른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 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해당 사업승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행위의 제한)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 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 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제16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제6조의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⑤ 시·도지사는 친환경 개발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보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보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정하도록 한다.
-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 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는 것으로 본다.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 인
-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허가

-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 2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 채등의 허가·신고
-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5.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하천수의 사용신고
-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 정
-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 시계획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 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 인
- 3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제 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4조제5항 및 8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

- 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 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요구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 공사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행정안전 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에 따라 의 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 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3장 국토중심 중부내륙 성장거점 조성

- 제20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1. 호수진흥지구
 - 2. 산림이용진흥지구
 - 3 첨단과학기술단지
 - 4 연구산업진흥단지
 - 5 투자진흥지구
 - 6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한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 주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 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이 타 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 전지역기금(이하"연계발전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기금 운용 수익금
 -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급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핵심 사업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 ① 충청북도지사는 청주 국제공항의 거점공항 육성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4조에도 불 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청북도지사"로 본다.
- 제26조(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 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수원의수실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 식품접객업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② 제1항에 따라 수변지역에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시설계획 등을 해당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의 시·도지사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사업추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에 대한 사 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댐용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제28조(청남대 구역의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청남대 구역에서는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9조(호수진흥지구 지정)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호수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상지역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 2. 대상지역의 자연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호수관광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호수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 5. 환경적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 6.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 7.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호수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호수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호수진흥지구의 명칭 · 위치 · 면적
 - 2. 호수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 3. 호수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 6. 생태 · 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 7. 안전 · 재해 대책 및 구조 · 구급 계획
- 8.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 9.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10.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11.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31조(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호수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3.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5.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호수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2조(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지역의 시·도 및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서 중부 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물관리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과 수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3조(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총유기 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34조(「하천법」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하천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의 지방하천의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지정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 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

- 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 목원에 필요한 시설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 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 제36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한정한다.
- 제37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

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해당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8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 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 5.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제39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 내륙연계발전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 다)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기정하여 로 구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조 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2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부내 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
-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진흥지구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 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4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 사는 제4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45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지역 주력 특화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말한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 제4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 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지역 특화 소재· 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7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①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의 시·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는 신산업·기술 창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신산업 · 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 2.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 4. 그 밖에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중부 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신산업·기술 창

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① 국가 또는 중부 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②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 용자의 일시부담금

- 제49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 ·도지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1.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산업발전법」 제8조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4. 「산업융합 촉진법」제3장에 관한 서비스산업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사용하는 사항
 -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사항
- 제50조(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1. 바이오헬스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
-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 4.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5. 바이오헬스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 6.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교류 협력 지원
-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51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5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 1. 첨단과학기술단지
 - 2. 연구산업진흥단지

- 3. 투자진흥지구
- 4.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 제5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
 하여 조성한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
 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농지법」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 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시·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시·도조례"로 본다.
- ⑧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5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의 지정을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6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 및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에 속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 제57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

- 및 시·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도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58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3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59조(감독) ① 사업승인권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0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 2.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